
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.

발 의 자 : 이헌승 · 김선교 · 이종배
유용원 · 김 건 · 성일종
이성권 · 김소희 · 박덕흠
김상훈 · 김재섭 · 안철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,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율 운용의 근거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의 변동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는 교육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교육재정 환경을 세율 조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교육세 세율의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

임(안 제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”를 “학령인구의 증감,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,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<u>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</u>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5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학령인구의 증감,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,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